

<p>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중 초등학교(강서)의 서울오곡초등학교란을 삭제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수정안</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안 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성별비율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p> <p>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p>	<p>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p> <p>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단위를 말하며, 실·국·과 및 담당관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p> <p>제 3 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p> <p>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p> <p>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p> <p>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p> <p>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p> <p>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p> <p>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p> <p>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공무원</p> <p>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p> <p>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입</p>
--	--